

# 서울특별시 침수 방z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4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3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구미경, 김규남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태, 김춘곤, 김형재,  
남창진, 문성호, 박영한,  
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 
유만희, 유정인, 윤영희,  
이은림, 이종태, 최민규,  
최유희, 홍국표 의원(23명)

## 1. 제안이유

-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z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침수 방z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나.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z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##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일부”를 “전부 또는 일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7조(비용 지원)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비용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전 부 또는 일부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